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

보도참고자료

보도 시점 2026. 3. 10.(화) 12:00 배포 2026. 3. 10.(화) 10:00

‘투자조합 명세서’ 제출 제도 최초 시행!
활성화된 자본시장을 더욱 투명하게!

– ’25.3.14. 이후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은 3.31.(화)까지 투자조합 명세서를 제출하세요 –

□ **국세청**(청장 임광현)은 **투자**를 **목적**으로 설립하는 **조합***을 대상으로 「**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·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**(이하 ‘투자조합 명세서’)」를 **’25년 귀속분**부터 **최초**로 **수집**합니다.

*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 비율(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출자가액 비율)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 형태(「민법」 제703조)

1 추진배경

□ **투자조합**은 **개인**에게 **소액 분산투자** 기회를 제공하고 **다수의 자금**을 모아 **벤처회사·스타트업** 등의 기업에게 **효율적**으로 **조달**하는 역할을 합니다.

○ 또한, **개인**이 투자조합을 통해 **벤처기업 등에 출자**하면 **양도소득세 비과세**, **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*** 등의 **세제 혜택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 거주자인 개인이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)

□ 하지만, **조합원**에 대한 **정보**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**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주가조작·편법적 지배구조 개편** 및 **양도소득세·증여세 탈세** 등에 **투자조합**을 **악용**할 **유인**이 **존재**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
| 투자조합을 악용한 탈세 사례 |

(유형❶) 상장주식을 보유한 투자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가 사실상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무신고

(유형❷) 배우자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 후 투자조합을 통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자금출처 소명을 회피하고 증여세를 탈루

(유형❸)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투자조합을 통해 전환사채 취득 후 주식 전환하는 방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전환이익 등에 대한 증여세 탈루

□ **투자조합 명세서**는 이러한 **위법·부당한 행태**를 **사전**에 **차단**하기 위해 **도입***되었으며, 제도 **정착 시 주식시장**의 **투명성**이 **제고**되고 **세원 관리 체계**가 보다 **정교해질 것**으로 기대됩니다.

*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82조 제8항에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('25.3.14. 시행)

2 주요 내용 및 작성·제출 방법

□ **(제출 대상자)** ① **투자**를 **목적**으로 **「민법」**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**조합**, ② 그 외에 투자를 목적으로 **「상법」** 및 **그 밖의 법률**에 따라 설립하는 **조합***이 **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**입니다.

* 「벤처투자법」상 개인투자조합·벤처투자조합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「농수산식품투자법」상 농식품투자조합 등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모든 조합이 해당

□ **(법 적용 범위)** '25.3.14.* 이후 **권리 등**을 **취득**하거나 **거래**한 투자조합이 올해 **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**이며 **시행일 이전**에 **취득**한 **권리 등**을 **변동 없이 계속 보유** 중인 투자조합은 **제출 대상**에서 **제외**됩니다.

* 개정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82조 제8항의 시행일

□ **(제출시기·방법)**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**제출 대상**인 **투자조합**은 3.31.(화)까지 **홈택스** 또는 **관할 세무서**(방문 또는 우편)에 **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* 해당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한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제출기한임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84조 제8항)

□ **(보고 대상)** 보유 및 거래 시 보고해야 하는 **'권리 등'**에는 **주식** 및 **출자지분**, **공채**, **사채***, **그 외 부채성 증권**, **집합투자증권**, **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**이 모두 포함됩니다.

* 전환사채(CB), 신주인수권부사채(BW) 등 주식연계채권을 포함

□ **(가액 산정)** 투자조합 명세서상 조합이 보유·거래하는 권리 등의 **가액**은 취득원가가 아닌 **해당 시점의 시가***로 **작성**하여야 합니다.

*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0조 시가 평가 원칙에 의거

○ 다만, 실무상 시가 평가 과정이 복잡한 **비상장주식**은 **매매사례가액**이 존재하지 않고 **보충적 평가방법**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**공정가치** 또는 **취득원가 자체**를 **가액**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3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및 당부 말씀

□ **국세청**은 **투자조합 관련 협회**들을 대상으로 **찾아가는 설명회***를 개최하여 **도입 취지**, **명세서 작성 방법** 등을 안내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현장의 **애로사항**을 **청취**하였습니다.

* 여신금융협회 설명회(2.11.),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설명회(2.26.)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주요 질의 사항은 유형별로 정리하여 'FAQ(자주 묻는 질문) 가이드'로 배포 예정

□ 투자조합 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**동영상 작성 매뉴얼**[1]·**카드뉴스** 등 **시각화 자료**를 제작하여 **국세청** SNS(유튜브, X, 인스타그램, 네이버 블로그 등) 및 **관련 누리집**[2]에 **게시**하였습니다.

1) 투자조합 명세서 작성 매뉴얼 동영상 QR 코드 :

2) 한국공인회계사회, 한국세무사회, 민간 투자 플랫폼(주주 zuzu.network, 미라파트너스 mirapartners.im, 쿼타북 quotabook.com)

□ 특히, 올해는 제도 시행 첫해로 **납세자**들의 **부담**을 **최소화**하면서 제도의 **안정적 정착**을 지원하기 위해 **미제출 가산세 규정**은 **별도로 두지 않은 만큼**, **자발적이고 성실한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**을 당부드립니다.

○ **국세청**은 앞으로도 **투명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 구축**에 앞장서 **편법적 부의 이전**을 사전에 **차단**하고 **소액 투자자**에게 **피해**를 끼치는 **불공정 탈세**에는 **엄정**하게 대응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	책임자	과 장 남아주 (044-204-3471)
		담당자	사무관 이창훈 (044-204-3482)
<협조>	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	책임자	과 장 이준목 (044-204-2501)
		담당자	사무관 김명원 (044-204-254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투자조합 명세서 양식 및 작성 방법

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21호의4서식] <신설 2025. 7. 4.>

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·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1. 조합 기본사항

① 조 합 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 (고유번호)		③ 대 표 자 성 명	
④ 설 립 일		⑤ 해 산 일		⑥ 권리 등 보유·거래연도	

2. 조합의 총 출자금에 관한 사항

⑦ 기 초			⑧ 증 가			⑨ 감 소			⑩ 기 말(해산일)		
출자좌수	1좌당 금액	총 출자금	출자좌수	1좌당 금액	총 증가금액	출자좌수	1좌당 금액	총 감소금액	출자좌수	1좌당 금액	총 출자금

3. 조합의 권리 등 보유·거래 현황

권리 등 종류				권리 등의 보유 및 증감 현황							
⑪ 종류	⑫ 발행법인		⑬ 상장여부	⑭ 기 초		⑮ 증 가		⑯ 감 소		⑰ 기 말(해산일)	
	법인명	사업자등록번호		수 량	가 액	수 량	가 액	수 량	가 액	수 량	가 액

4. 조합원에 관한 사항

일련번호	조합원					변동 내역(출자좌수)											
						기 초		증 가				감 소				기 말(해산일)	
	⑱ 구 분	⑲ 성 명 (법인명)	⑳ 주민번호 (사업자번호)	㉑ 거주지국 코드	㉒ 최대출자자와의 관계	㉓ 출자좌수	㉔ 출자지분	㉕ 양 수	㉖ 상 속	㉗ 증 여	㉘ 기 타	㉙ 양 도	㉚ 상 속	㉛ 증 여	㉜ 기 타	㉝ 출자좌수	㉞ 출자지분
합 계																	
1																	
2																	
3																	
4																	
5																	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8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·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자 :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(뒤쪽)

작 성 방 법

1. 이 서식은 투자를 목적으로 「민법」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과 투자를 목적으로 「상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82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작성합니다.
3. "① 조합명"란부터 "⑤ 해산일"란까지: 명세서를 제출하는 조합의 기본사항을 적되, "⑤ 해산일"란은 해당 조합이 해당연도에 해산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4. "⑥ 권리 등 보유·거래연도"란: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거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연도를 적습니다.
5. "⑦ 기초"란부터 "⑩ 기말"란까지: "⑦ 기초"란에는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조합에 출자된 출자좌수, 1좌당 금액 및 총 출자금을 적고, "⑧ 증가"란 및 "⑨ 감소"란에는 해당연도 중 증가하거나 감소한 출자좌수, 1좌당 금액 및 총 증가 또는 감소금액을 적으며, "⑩ 기말(해산일)"란에는 해당연도 12월 31일 또는 해당 조합의 해산일 현재 출자좌수, 1좌당 금액 및 총 출자금을 적습니다.
6. "⑪ 종류"란: 조합이 보유·거래한 권리 등을 다음 코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구분	주식	출자지분	공채	사채	채권	집합투자증권	특정시설물이용권리	기타
코드	01	02	03	04	05	06	07	08

7. "⑫ 발행법인"란: "⑪ 종류"란이 주식(01) 또는 출자지분(02)인 경우에만 작성하며,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8. "⑬ 상장 여부"란: 조합이 보유·거래한 권리 등의 상장 여부를 다음 코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구분	유가증권시장 상장	코스닥시장 상장	기타시장 상장	비상장
코드	01	02	03	04

9. "⑭ 기초"란부터 "⑰ 기말"란까지: "⑭ 기초"란에는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조합이 보유한 권리 등의 수량 및 가액을 적고, "⑧ 증가"란 및 "⑨ 감소"란에는 해당연도 중 거래를 통해 증가하거나 감소한 조합의 권리 등의 수량 및 가액을 적으며, "⑩ 기말(해산일)"란에는 해당연도 12월 31일 또는 해당 조합의 해산일 현재 조합이 보유한 권리 등의 수량 및 가액을 적습니다.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가액으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평가액을 적습니다.
10. "⑱ 구분"란: 출자지분율이 가장 높은 조합원은 최대출자자로 적고, 그 외의 경우는 기타로 적습니다.
11. "㉑ 거주지국 코드"란: 국제표준화기구(ISO)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(ISO-3166, 알파벳 두 글자)를 적습니다. 국내 거주자의 경우는 기재하지 않으며, 조합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라부안 코드(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,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)를 적습니다.
12. "㉒ 최대출자자와의 관계"란: 조합원의 최대출자자와의 관계를 다음 코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

구분	본인	배우자	자	부모	형제자매	손(孫)	조부모	02~06의 배우자	01~07 외의 친족	기타	특수관계법인
코드	00	01	02	03	04	05	06	07	08	09	10

13. "㉓ 출자좌수"란 및 "㉔ 출자지분"란: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해당 조합원의 출자좌수 및 출자지분비율을 적습니다.
14. "㉕ 양수"란부터 "㉜ 기타"란까지: 해당연도 중 해당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증가 및 감소 내역을 사유별로 적습니다.
15. "㉝ 출자좌수"란 및 "㉞ 출자지분"란: 해당연도 12월 31일 또는 해당 조합의 해산일 현재 해당 조합원의 출자좌수 및 출자지분비율을 적습니다.

참고 2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한 탈세 사례

(유형❶) 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주식등 양도소득세 탈루

투자조합의 기존조합원(A)이 신규조합원(B)에게 출자지분을 일부 양도하고 투자조합은 출자지분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OO주식을 A와 B에게 출고하여 A는 사실상 상장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

(유형❷) 투자자금 수증 후 자금출처 소명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조합에 출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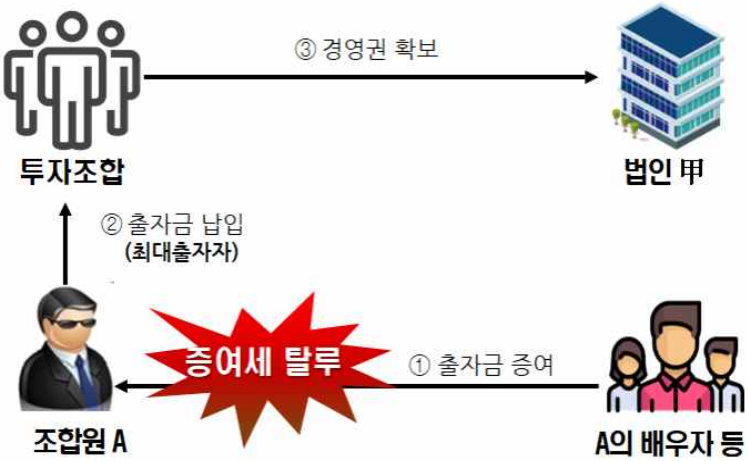

OOO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되었으며 해당 투자조합은 ㈜△△의 최대주주 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 등으로부터 수증한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

(유형❸) 투자조합을 통해 특수관계를 은폐하고 전환사채 전환이익 증여세 탈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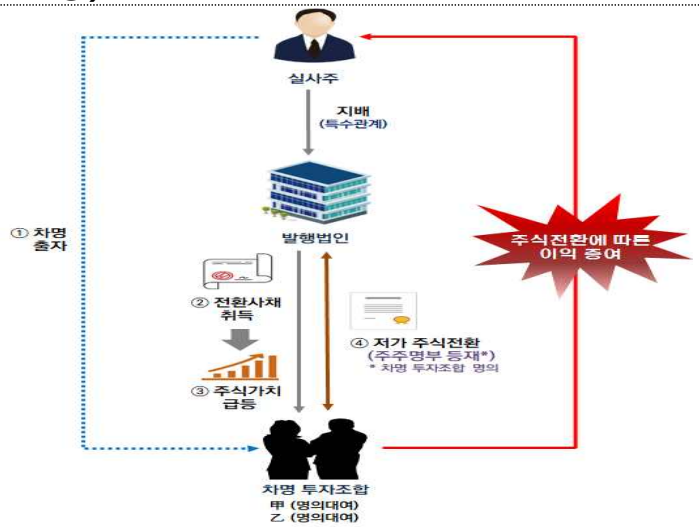

사주ㅁㅁㅁ가 차명 출자한 투자조합이 ㅁㅁㅁ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주식가치 급등 후 주식전환을 하여 지배력 확대 ·경영권 편법승계 및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」)에 대한 증여세 탈루

참고 3 명세서 제출 가이드 : 가액 기재 방법

□ 명세서 상 가액 부분은 ①**상증법상 시가**를 **반영**하고, ②**[(기초가액) + (증가가액) - (감소가액) = (기말가액)]** 등식이 성립하도록 작성합니다.

권리 등의 보유 및 증감 현황							
⑭ 기 초		⑮ 증 가		⑯ 감 소		⑰ 기 말(해산일)	
수 량	가 액	수 량	가 액	수 량	가 액	수 량	가 액

전기말 상증법상 시가	**취득원가 + 평가이익**	**회수총액 + 평가손실(감액)**	**당기말 상증법상 시가**

□ **(사례 1)** (기초 100주, 1억(시가)), (당기에 100주, 2억(취득원가) 취득), (기말 200주, 4억(시가))인 경우 : **증가가액에 평가이익 1억 원 반영**

권리 등의 보유 및 증감 현황							
⑭ 기 초		⑮ 증 가		⑯ 감 소		⑰ 기 말(해산일)	
수 량	가 액	수 량	가 액	수 량	가 액	수 량	가 액
100	1억원	100	2억원			200	4억원
		0	1억원 ← 평가이익				

○ 기재 시에는 취득원가와 평가이익을 합하여 한줄로 기재

권리 등의 보유 및 증감 현황							
⑭ 기 초		⑮ 증 가		⑯ 감 소		⑰ 기 말(해산일)	
수 량	가 액	수 량	가 액	수 량	가 액	수 량	가 액
100	1억원	100	3억원			200	4억원

□ **(사례 2)** (기초 100주, 1억(시가)), (기말 100주, 0억(시가))인 감액한 투자기업의 경우 : **감소가액에 평가손실(감액) 1억원 반영**

권리 등의 보유 및 증감 현황							
⑭ 기 초		⑮ 증 가		⑯ 감 소		⑰ 기 말(해산일)	
수 량	가 액	수 량	가 액	수 량	가 액	수 량	가 액
100	1억원			0	1억원	100	0

평가손실

참고 4 자주 묻는 질문 FAQ

Q 1 법 시행('25.3.14.) 이후, 어떤 경우에 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나요?

A **법 시행일 이후** 투자조합이 **새로운 권리** 등을 **취득**하거나 **기존**에 보유하던 **권리**를 **처분**(양도, 상환 등) 또는 **증자**하는 등 **단 한 건**이라도 권리 등의 변동(거래)이 발생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.

- 이때, 행정 관리의 완결성과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**해당 거래 자산 뿐만 아니라 조합이 보유 중인 전체 권리 내역**을 명세서에 포함하여 **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* (예시) 23년 말 A, B, C, D 권리를 취득한 투자조합

① 24년 말 A, B, C, D 권리 모두 처분(투자종료) : 제출 의무 없음(폐업신고대상)

② 24년 말 A, B, C 권리 처분, D 권리 보유(거래 없음) : 제출 의무 없음

③ 24년 말 A, B, C 권리 처분, 25년 말 D 권리 처분 : D 권리 제출 의무 있음

④ 24년 말 A, B 권리 처분, 25년 말 C 권리 보유(거래 없음), 25년 말 D 권리 처분 : C, D 권리 제출 의무 있음

Q 2 법 시행일 이후에도 권리 등의 변동이 없는 조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?

A **법 시행일 이후**에 **신규 취득**이나 **처분** 등 어떠한 권리 등의 변동도 발생하지 않은 조합은 **당장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.**

- 이러한 조합은 향후 **첫 번째 권리 등**의 **취득**이나 **거래**가 **발생**하는 **시점**에 맞춰 조합의 **전체 자산 현황**을 **신고**해 주시면 됩니다. 이는 모든 조합을 일시에 신고하게 하기보다, 거래가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Q 3 현재 투자 사업을 종료하였는데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?

A **'25.3.14. 전**에 **투자사업**을 **종료**한 경우에는 **투자조합 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** 세무서에 등록한 고유번호에 대해 폐업신고 하기 바랍니다.

다만, **'25.3.14. 이후 투자사업을 종료**한 경우에는 **투자사업 명세서**를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**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- (폐업신고방법) 홈택스 로그인 → 증명·등록·신청 →사업자등록 신청·정정·휴폐업 →휴·폐업·재개업 신고 →휴·폐업 신고

Q 4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이며,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?

A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0조에 따른 **시가 평가**가 **원칙**이나, 실무적 편의를 위해 **매매사례가액**(최근 유상증자 단가 등)이나 **외부 회계법인** 등에서 **평가한 공정가치**를 **폭넓게 인정**합니다. **객관적 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 증빙된 취득원가** 기재를 허용하는 등 GP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.

Q 5 투자조합의 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?

A **투자조합이 권리등**을 **취득**하여 **보유**하거나 **거래**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는 **연도의 말일**(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)**부터 3개월 이내**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Q 6 투자조합 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?

A **투자조합 명세서**는 **홈택스**를 통한 **전자파일** 제출, 관할 세무서 **방문 제출**, 또는 **등기우편 접수**가 가능합니다.

- (홈택스 제출 방법) 홈택스 로그인 → 지급명세·자료·공익법인 →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·내역조회 → 민원종류검색 → 민원유형/제출 → 민원사무명/투자조합의 권리등 보유·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

Q 7 투자조합 명세서 미제출이나 부실 기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?

A 본 제도는 과세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, 투자조합의 **투명한 자산 관리**를 위한 **행정 협조 의무**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시행 초기에는 가산세 부과보다는 **제도 안착**을 위한 **행정지도**와 **실무적 지원**에 집중할 예정입니다.

- 다만, 향후 제출현황을 파악 후 **가산세 부과**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**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검토**할 예정입니다.

Q 8 명세서 제출을 통해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는 어떻게 활용되나요?

A 수집된 데이터는 **투자조합**의 **투명성**을 높이는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, 향후 **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**, **투자조합 소득공제 제도** 등과 **연계**될 예정입니다. 이를 통해 출자자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는 수고를 더는 등 해당 명세서가 **납세자 편의 제고**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참고 5 **투자조합 명세서 카드뉴스**

투자조합의 권리 등 명세서 제출 안내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개정에 따라,
'25년 귀속분부터 투자조합은 「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·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」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제출대상

'25년 3월 14일 이후
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·보유하거나
거래하는 경우

국세청 HomeTax

투자조합의 권리 등 명세서 제출 안내

제출 대상자

✓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

1. **투자**를 **목적**으로 「**민법**」 **제703조**에 따라 **설립하는 조합**
2. ①의 조합 외에 투자를 목적으로 「**상법**」 및 **그 밖의 법률***에 따라 **설립**하는 조합

* 벤처투자법(개인투자조합, 벤처투자조합),
여신전문금융업법(신기술사업투자조합)
농수산식품투자법(농식품투자조합) 등

국세청 HomeTax

투자조합의 권리 등 명세서 제출 안내

제출 기간

권리등을 보유·거래한 연도의 말일부터
2026. 3. 31. (화) **까지**

국세청 HomeTax

투자조합의 권리 등 명세서 제출 안내

제출 내용

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·거래내역,
투자조합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등을
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합니다.

투자조합의 권리 (보유·거래내역) | **인적사항** | **출자지분**

※ 제출방법 :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(민원실) 방문 서면 제출

국세청 HomeTax